

보도자료

배포일시 : 2017. 3. 30.(목)

자료문의 : 유해정보팀장 정혜정(T: 3219 - 5160)

(07995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5~19층



www.kocsc.or.kr

방통심의위, 2017년 1분기 애플리케이션 불법정보 554건 시정요구

- '성인대상 채팅 애플리케이션' 등 4건에 대해서는 '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' -

- 방통통신심의위원회(위원장 박효종)는 올해 1분기 동안,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통된 불법정보 554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.
- 시정요구 조치된 불법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, ▲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판매한 정보(256건, 46.2%)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▲음란·성매매정보(143건, 25.8%), ▲마약판매정보(81건, 14.6%)가 그 뒤를 이었다.
-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는 ▲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'불건전 전화서비스'(폰팅·전화방·화상대화방 등)를 제공한 애플리케이션 1건과 ▲'성인대상 채팅서비스' 애플리케이션 3건에 대해 '청소년유해매체물'로 결정했다.
-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'청소년유해표시 의무'가 부과되고, 만약 이를 어기면 위원회의 시정요구(표시 의무 이행) 대상이 된다.

<표> 위반유형별 조치현황

구분	시정요구							청유물 결정
	의약품 불법판매	음란 / 성매매 등	마약류 매매	담배 불법판매	불법대출	불법 명의거래	합계	
건수	256	143	81	37	28	9	554	4

■ 방통심의위는 “최근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 성매매·음란채팅 등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, “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불법·유해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”이라 밝혔다.